

---

## 주요 글로벌 ESG 규제 동향과 2024년 전망

January 18, 2024

### I. 들어가며

2023년에는 이슈에 따라 ESG 투자, ESG 경영이 일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나, ESG 규제 및 제도의 구체화에 따라 본질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3년의 ESG 논의에 대해 회고하고, 2024년 전망을 통해 국내 기업이 2024년 ESG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II. 주요 글로벌 ESG 규제 동향

#### 1. ESG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향후 전망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정치 이슈화 및 부정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에서 이슈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즈니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및 ESG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투자이사 결정시 ESG를 고려할 것인지에 관한 법적, 정치적 공방

2023년 1월, 텍사스 등 25개 주는 퇴직연금의 투자이사 결정시 ESG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연방법 위반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주 지방법원은 해당 규칙이 재무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미국 의회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위 규칙 개정의 무효화를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평가기관 및 투자자의 ESG 논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실제

2023년 6월, BlackRock CEO는 향후 “ESG”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ESG” 단어의 정치화 때문이며, 여전히 투자대상기업의 탈탄소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S&P는 신용평가 보고서에 ESG 등급을 기재하지 않겠다고 공지하면서 그 대신 기존의 신용 분석에 ESG 요소를 포함시켜 신용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의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리뷰 2022 리포트에 따르면, 지속가능 투자 규모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약 20% 증가하였으나, 미국은 14% 감소하였으며 그 절대치는 미국의 감소분이 미국 이외의 국가의 증가분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경우 2020년과 다르게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ESG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집계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ESG를 고려한 투자대상 선별 방식의 투자방법보다 기존 피투자기업에 대해 ESG와 관련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의 투자방법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오히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자의 ESG에 관한 행동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해외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본격화

### 유럽 - ESRS 산업부문별 지표 채택 연기 및 CSRD 적용대상 조정, 가이드스 초안 공표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제도(CSRD)에 따르면, 유럽 각국은 2024년부터 ESG 공시를 법제화하여 늦어도 2025년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CSRD의 세부 공시표준인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는 2023년 7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12월 공식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뉴스레터를 참고 바랍니다.

- [EU 집행위원회, EU의 ESG 공시 이행을 위한 세부지표 채택 \(shinkim.com\)](https://shinkim.com)

**[산업부문별 공시 표준 채택 연기]** EU 의회는 ESRS의 완화를 10월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2024년 6월 채택될 ESRS의 산업부문별 공시 표준은 2년 연기되어 2026년에 채택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EU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을 따르는 기업은 올해부터 일반 공시표준에 따른 기업 공시를 준비하여 2025년에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 조정]** EU 집행위원회는 EU 내에서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2013년 정의된 회계기준상 기업규모의 자사총액, 매출액 요건을 약 25%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이 반영됨에 따라, CSRD 적용 기업의 요건 역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
대기업	(1)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초과 (2) 순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3) 평균 직원수 250명 초과	(1) 자산총액 <b>2천 5백만</b> 유로 초과 (2) 순 매출 <b>5천만</b> 유로 초과 (3) 평균 직원수 250명 초과
중기업	(1)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하 (2) 순 매출 4천만 유로 이하 (3) 평균 직원수 250명 이하	(1) 자산총액 <b>2천 5백만</b> 유로 이하 (2) 순 매출 <b>5천만</b> 유로 이하 (3) 평균 직원수 250명 이하
소기업	(1) 자산총액 4백만 유로 이하 (2) 순 매출 8백만 유로 이하 (3) 평균 직원수 50명 이하	(1) 자산총액 <b>5백만</b> 유로 이하 (2) 순 매출 <b>1천만</b> 유로 이하 (3) 평균 직원수 50명 이하
초소형기업	(1) 자산총액 35만 유로 이하 (2) 순 매출 7십만 유로 이하 (3) 평균 직원수 10명 이하	(1) 자산총액 <b>45만</b> 유로 이하 (2) 순 매출 <b>9십만</b> 유로 이하 (3) 평균 직원수 10명 이하

**[가이던스 초안 공표]**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은 올해부터 공시를 준비하는 EU의 기업을 위해 이중 중대성 평가, 밸류체인, ESRS 데이터포인트 리스트에 대한 가이던스 초안을 2023년 12월 공표하였으며, 2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은 이러한 해외의 동향과 가이던스의 내용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 SEC 기후공시 및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관련 입법

**[SEC 기후공시]** SEC는 2022년 3월 기후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화 규칙의 제정을 제안하면서, 상장 대기업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에 관한 2023년의 정보를 2024년에 공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입안될 예정이었던 SEC의 기후 관련 공시 규칙은 의견 수렴 및 논의가 계속되면서 입안이 지연되어 왔고, SEC는 2023년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2월 발표된 행정부의 기관별 의제 목록에 따르면, SEC는 2024년 4월에 기후 관련 공시 규칙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는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는 기후 관련 기업 데이터 투명성법(Senate Bill 253)과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 법(Senate Bill 261)을 입법하여, 매출 1조 달러 이상의 기업에 2025년의 직접배출량(Scope 1)과 간접배출량(Scope 2), 밸류체인 배출량(Scope 3)을 2026년부터 공시하도록 하고,

매출액 500백만 달러 이상의 기업에 격년으로 기후 관련 재무리스크 및 이에 대한 완화 전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 ESG 공시 의무화의 연기

2021년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의무화 계획이 발표되고 2023년 6월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자,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주요국 ESG 공시 일정 및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할 것임을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적합성을 높이고자 ESG 공시 의무화를 연기하였으나, 2024년을 기점으로 해외의 ESG 공시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 말부터 2분기 사이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3.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는 다양한 법안과 무역의 연계

### EU - 탄소국경제도 및 배터리규정, 산림규정과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2023년부터 EU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 투자 및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입안되었으며,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다양한 규제들은 목적과 규율범위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외부 영향을 식별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BAM]** 2023년 5월, 제품의 전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발효되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준비기간)이 시작되어, 적용대상 기업은 2023년 10월-12월에 대한 분기보고서를 2024년 1월 말까지 제출하고 전환기간 내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월부터는 확정기간이 시작되어, CBAM 신고서 제출과 연 1회 이상 현장검증 및 신고, 검증보고서 제출, CBAM 인증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EU 산림전용(轉用) 규제]** 2023년 6월, EU의 산림 전용 방지 규정(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EU에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및 관련 파생제품을 출시하는 운영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 방지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실사하였다는 선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말에 위 규정의 의무 적용 대상인 공급망 참여 주체(운영자, 거래자)와 국가별 위험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므로 의무적용대상 및 실사대상이 되는 기업은 2024년 실사에 따른 2025년 실사결과 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 규제]** 2023년 8월, 배터리의 원자재 조달, 제조, 사용 및 재활용을 다루는 EU 배터리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탄소발자국 선언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5년 배터리 실사, 2025-6년 배터리 주요 정보 표시(라벨링),

2027년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정보 디지털 이력관리(배터리 여권)와 2036년까지의 재활용 원료 사용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예방·제거·최소화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위 지침의 적용대상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와 함께,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이 되면 공급망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23년 내 입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다소 논의가 지연되었으나 2023년 12월 잠정적 합의가 완료되어, 2024년 공식적 채택 및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 미국 -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집행 강화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채굴, 생산, 제조된 모든 상품 및 부품 또는 해당 지역 내 강제노동과 관련된 특정 단체에 의해 생산된 상품 및 부품을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하여 미국 내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며 2023년 8월 수출통제 명단에 중국 기업이 추가되는 등 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은 지속적인 관찰 및 공급망 실사를 통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레터를 참고 바랍니다.

- [EU의 新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탄소국경조정\(CBAM\) 및 외국보조금\(Foreign Subsidy\) 관련 규정 검토 \(shinkim.com\)](#)
- [미국 및 EU 發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美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강화 및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입안 경과 \(shinkim.com\)](#)

## 4. ESG 펀드 공시 및 그린워싱 규제

### ESG 펀드 공시

**[EU]**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s Regulation, SFDR)는 2021년 3월 발효되어, EU 역내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ESG 투자규모 및 환경,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며, EU 역내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는 2023년 2월 원자력 관련 활동이 포함된 탄소노미를 규정할 수 있도록 SFDR의 위임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편집 가능한 양식을 공개적으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미국]** SEC는 2023년 9월, 그린워싱을 단속하기 위하여 특정 유형의 투자로 판단되는 명칭을 가진 펀드는 자산가치의 최소 80%를 해당 투자정책에 부합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펀드 그룹은 발효 24개월 내에 개정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순자산이 10억 달러 미만인 펀드 그룹은 발효 30개월 내에 개정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향후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펀드는 앞으로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의 경우 2023년 12월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정정공시 신고에 대한 ‘집중심사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며,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기존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공시가 완료되는 2024년 2월 이후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뉴스레터를 참고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shinkim.com\)](http://shinkim.com)

## 그린워싱 규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 제품의 친환경 주장에 대한 검증가능성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지침을 입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2023년 9월 이사회와 의회는 이 지침의 입법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초 공식 채택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EU의 개별 국가는 24개월 내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직원수 10명 이상, 매출액이 200만 유로 이상인 EU 내 기업은 친환경에 대한 주장 시 이에 대한 입증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환경 라벨링 시스템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2023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고, 10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하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기업은 2019년 45개사에서 2022년 2,676개사로, 2023년 8월까지 1,388개사로 그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2024년 지속적으로 강화될 그린워싱 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그린워싱 방지 위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shinkim.com\)](http://shinkim.com)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shinkim.com\)](http://shinkim.com)

### III. 2024년 주요 ESG 트렌드 전망

지속가능성 환경에 대한 적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MSCI, 톰슨 로이터 등 해외의 기관을 중심으로 발간되는 트렌트 관련 보고서들도 살펴봐야 하는데 이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규제 동향 외에도 이러한 보고서 및 다양한 국내외 ESG 트렌드에 비추어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ESG 공시 관련 해외 규정의 준용 시 유의사항

국내 ESG 공시제도 의무화가 연기되었으나, 기업들은 기존에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을 이용하여 발간하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ESRS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으로써 향후 의무화될 ESG 공시제도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격적인 공시규제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ESG 공시에 흠결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와 투자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대성 평가 유의사항]** 다수의 기업은 이미 2023년에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중요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대성 평가를 통해 중요한 보고이슈로 결정된 사항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GRI와는 다르게, ESRS에서는 중요 보고 이슈라고 판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중대성 평가의 결과와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ESRS에 따른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기재할 경우,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가 오인할 만한 기재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후정보의 세부사항 주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는 기존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구조가 유사하므로 다수의 기업은 이를 먼저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MSCI는 기업의 기후 정보를 읽을 때 ‘거짓된 배출량 공시’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각주나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특정 화석 연료 자산에 계속해서 투자하면서도 해당 탄소 배출량을 조인트벤처(JV), 자회사 등에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공시에서 누락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세부 문구 및 구조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ESG 정보를 공개할 때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기후 및 인권 문제에 대한 투자자 중심의 engagement 지속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2023년부터 기후 공시와 관련된 이사의 선임 관련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사회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주주제안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3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중점관리사안으로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추가하였습니다.

통상 의결권 자문사 및 이를 이용하는 해외 기관투자자 및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업과의 대화 및 관찰을 일정 기간 진행한 후 주주총회 시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주행동으로 단계를 격상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주행동의 양상은 다른 자산운용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후 및 인권 문제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업은 기후 및 인권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시를 준비함과 더불어,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투자자와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 역시 성공적 자산운용 위탁을 위해 실질적 책임투자 체계 구축 및 UN PRI 가입 등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 3. 자연자본 및 생물다양성 이슈의 부상

MSCI와 톰슨 로이터는 공통적으로 2024년의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있어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의 대두를 제시하였습니다. MSCI는 자연자본과 관련한 투자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녹색채권 신규발행 규모는 지난 5년간 3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토지나 해양보존 조치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약속하는 대가로 개발도상국의 해외부채를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자연부채스왑(Debt for Nature Swap) 시장이 8000억 달러(약 1041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민간투자자들의 신규 시장 진입 역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톰슨 로이터 역시 생물다양성과 자연에 초점을 맞춘 투자 펀드의 수와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유럽의 생물다양성 전용 펀드 운용자산이 4배 증가함을 지적하였습니다.

MSCI에 따르면 토지, 물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유틸리티, 원자재, 소비재 부문의 기업이 전세계 생물종 멸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자연자원에 의존성이 큰 기업의 경우, 2023년 9월 공시 권고안을 확정된 TNFD(The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4. 인권 및 환경, 반부패 위험관리의 체계화와 공급망 확장

공급망 실사의 법제화에 따른 공급망 관리 필요성은 다수의 글로벌 기관에서 중요시하는 2024년의 주요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 중소 중견 기업의 인권 및 환경, 반부패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SG 공시의 준비]** 이중 중대성 평가 가이드는 밸류체인 중대성 평가에 있어 UN, OECD의 실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CSRD는 공급망 실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역시 밸류체인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사의 ESG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ESG 위험을 중대성 평가 목적으로 연 1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보다 수시로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밸류체인으로 확장함으로써 ESG 공시의 기반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ESG 평가의 준비]** 2023년 한국 ESG기준원의 ESG 평가 결과에 따르면, B+ 등급 이상의 기업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및 사회 영역의 A+ 등급 기업과 A 등급 기업이 지나치게 늘어, 향후 평가체계 고도화 및 평가등급 부여 기준의 상향이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글로벌 공시기준에 따른 평가체계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해외 입법 중 국내 기업에서 준비가 필요한 인권 및 환경 실사 관련사항이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다양한 ESG 평가기관이 AI를 통하여 더욱 고도화된 방법으로 기업이 노출된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상시적으로 인권 및 환경 관련 위험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력 및 거래처 협상력 강화]**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공급망 실사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국제분쟁과 공급망 불안정성이 예상되면서, 인권 및 환경뿐만 아니라 반부패 실사 역시 중요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망 실사에 있어 경쟁력 및 거래처 협상력을 강화하려면, 사전에 공급망 평가 정책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며, 공급망 관련 정보를 식별하여 분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5. 기업지배구조 모니터링의 강화

일본 동경증권거래소는 2024년 1월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공시한 기업을 매월 공표하기로 하였으며, PBR (Price-to-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과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가 높은 기업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JPX 프라임 150 지수를 활용하여 일본 상장기업들에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실질적 기업가치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PBR이 다른 국가에 대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기업지배구조에 일부 기인한다는 점은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발간된 맥킨지 대한민국 분석 보고서에도 이러한 사항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발간된 ACGA (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의 CG Watch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환경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8위로 상승하였으나 국내 개별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총합 순위는 2020년 12개국 중 10위에서 2023년 12개국 중 11위로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와 더불어 기존에 간과되던 이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요소가 향후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2023년 12월 금융감독원의 “은행지주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서 제시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 전문성 평가와 활용]** 기업은 이사의 선임 시 개별 이사 후보의 이사회 적합성을 고려하기 위해 역량평가표 (Board Skill Matrix)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량평가표는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홈페이지에 ESG 현황 공시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사 선임시 핵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역량평가표의 지속적 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CEO 선임 및 승계 체계의 구체화]** 기업은 형식적인 CEO 승계계획의 수립에서 나아가서 후보관리부터 최종 선정까지 경영승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승계계획(상시후보군 관리→승계절차 개시→Long-List 확정→Short-List 확정→최종후보 확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은 조기 후보군 선정 및 장기간의 평가와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검토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경영승계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 성과의 평가와 활용]** 이사회 자체의 평가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주요 요구사항이며 ESG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평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사회는 스스로 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개선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ESG 규제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의 위험이 곧 재무적 위험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여러 기업을 통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ESG 전망을 분석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위험은 더 이상 ESG 부서만의 관리사항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협업과 경영진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ESG 규제의 원년으로, ESG 관련 규제의 세부적 기술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해외 대기업을 위주로 ESG 규제의 대응 동향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사슬에서의 환경 및 인권은 전세계 경제의 기반이자 기업 경쟁력, 거래처 협상력의 중요 요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과 개선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기업은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ESG 센터는 다양한 부서가 맞닥뜨리는 ESG 관련 사항에 종합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기존의 ESG 경영 자문을 포함한 다양하고 새로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와 관련한 문의사항 및 ESG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법무법인(유) 세종 ESG 센터

- 송수영 | 변호사 T. 02-316-1636 E. sysong@shinkim.com
- 장윤제 | 전문위원 T. 02-316-2895 E. yjjang@shinkim.com
- 한유정 | 선임컨설턴트 T. 02-316-4352 E. yjhan@shinkim.com
- 김성은 | 변호사 T. 02-316-4349 E. seukim@shinkim.com
- 정윤수 | 변호사 T. 02-316-2869 E. ysjung@shinkim.com

[부록] 2024년 주요 ESG 관련 실무자 검토 필요 이슈

일정	주요 이슈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li> <li>• 순환자원 지정 고시제 시행</li> <li>•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li> <li>• EU CBAM 첫 분기 보고서 제출</li> <li>• EU ETS 확대 시행 → 해운 산업 적용</li> <li>• 미국 청정경쟁법안(CCA) 단계적 도입</li> <l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준비</li> <li>* 정기주주총회 관련 이사회 준비 및 사업보고서 준비</li> <li>* ESG 관련 추진과제 수행 착수</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원 ESG펀드 공시기준(자산운용보고서) 시행</li> <li>• EU 배터리규정(EU Batteries Regulation) 시행</li> <li>* 정기주주총회 및 사업보고서 관련 이사회 준비</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발표(전망)</li> <li>*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사업보고서 공시</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C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 발표(예정)</li> <li>* S&amp;P Global CSA 플랫폼(설문지) 오픈(예정)</li> <li>* 신규선임 이사 관련 이사회 ESG 안건 보고</li> <li>* ESG 평가 기업지배구조 분야 시작</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5천억 원 이상 KOSPI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li> <li>• KCGS ESG 평가 (환경/사회) 분야 개시</li> <li>•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정보 등록</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li> <li>* KCGS 평가등급 발표</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삼림벌채규정(EUDR) 발효</li> <li>* S&amp;P Global DJSI(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 발표</li> </ul>

<p>연내 중요 이벤트</p>	<p><b>[구체적 시점 미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발표</li> <li>•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li> <li>•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년)」 및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 발표</li> <li>•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및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li> <li>• CFE(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CFE 프로그램’ 개발</li> <li>•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EU CSDDD) 발효</li> <li>•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발효</li> </ul>
--------------------------	--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